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5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추미애·송옥주·전재수

부승찬 • 전종덕 • 신영대

박희승 • 박선원 • 오세희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음.

이에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를 제13조의6으로 하고,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조의6(종전의 제13조의5)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를 "제13조,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에"로 한다.

제13조의5(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의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위원회는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를 "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를 실

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로, "통신제한조치 및"을 "통신제한조 치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3조의5"를 각각 "제13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13조의5(국회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의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
<u>제13조의5</u>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	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위원회는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 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1. (생략)

의 사용 제한)
제13조, 제13조의4
<u>및 제13조의5에</u>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
조의무) ①
<u>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u>
관의 장 또는 국정감사・국정
조사 ·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
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
다)가
<u>통</u> 신제한조치 또는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혀해과 간음)

-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③ 제11조제2항(<u>제13조의5</u>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u>제13조의6</u>
③제13조의6
4
<u>제13조의6</u>